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금리 신청 안내

① 신청대상: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업 중 금리우대 각 항목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기업

* (제외대상) 고정금리 적용 자금(청년전용창업(2.5%), 통상변화대응(2.0%), 선제적 자율구조개선(2.5%), 재해지원(1.9%)) 등

****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, [추가서류 제출] 항목에 증빙자료 제출 필수**

② 금리우대 한도: 시설자금 우대(0.3%p) 포함하여 **개별 대출별 최대 0.4%p**까지 허용

분야	금리우대 항목	금리우대 한도
성실경영	■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(재창업자금)	△0.3%p
유망기업	■ 소·부·장 강소기업 100+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■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■ 도약(Jump-up) 프로그램 선정기업 ■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■ AX 스프린트 우대트랙('26년 신설)	항목별 △0.1%p 최대△0.1%p
정책연계	■ 신보 매출채권보험(다사랑보험) 가입기업 (창업기반지원자금(운전))	△0.1%p
포용금융	■ 사회적경제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	항목별 △0.1%p 최대△0.1%p
성과창출	■ 고용증가, 수출증가, 매출증가	항목별 △0.1%p 최대△0.3%p

* (예시) 사회적경제기업(△0.1%p), 여성기업(△0.1%p) 두 개 항목 모두 해당되더라도 포용금융 분야는 △0.1%p 금리인하 적용

③ 신청요건 및 증빙자료

○ 성실경영

- (신청요건)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‘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’ 사업의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금 신청기업

- (증빙자료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한 ‘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’ (유효기간 내)

○ 유망기업

- (신청요건) 중소기업부에서 선정한 소·부·장 강소기업 100+, 소·부·장 스타트업 100, 소·부·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, 도약(Jump-up) 프로그램 선정기업, 아기유니콘, 예비유니콘 및 AX 스프린트 우대트랙*(신설)

* (대상)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기업('26 중 선정 예정), AI 및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 도입·활용 기업(신청) 창업기반지원(AX 스프린트 트랙 I, II), 혁신성장지원(AX 스프린트 트랙 I, II) 자금코드 신설하여 우대금리 적용

- (증빙자료)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정책우대 분야 선정기업 ‘공문’ 등 관련 서류

*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중진공 담당자와 사전 확인 필요

○ 정책연계

- (신청요건)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(다사랑보험) 가입기업 중 창업기반지원자금(운전) 신청기업

- (증빙자료)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‘중소기업 지원우대 추천서’ (유효기간 내)

* 한사랑보험 등 유사명칭의 매출채권보험 우대 불가

○ 포용금융

① 사회적경제기업

- (신청요건)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협동조합*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기업

*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근거하지 않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), 중소기업협동조합(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) 등은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이 아닐 시 사회적경제기업 미해당

- (증빙자료)

유형	근거	소관부처	증빙자료
사회적기업	사회적기업육성법	고용노동부	‘사회적기업 인증서’
예비사회적기업	지역 조례·규칙, 부처별 지침	지자체 및 중앙부처	‘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’
협동조합	협동조합기본법 * 법인번호 5,6번째 자리가 5,1인 협동조합	기획재정부	‘조합 신고필증’ 또는 ‘설립인가증’
마을기업	행정안전부 지침	행정안전부	‘마을기업 지정서’
자활기업	국민기초생활보장법	보건복지부	‘자활기업 인정서’
소셜벤처기업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	중소벤처기업부	‘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’

② 여성기업

- (신청요건)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

- (증빙자료)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‘여성기업 확인서’ (유효기간 내)

③ 장애인기업

- (신청요건)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

- (증빙자료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‘장애인기업 확인서’ (유효기간 내)

○ 성과창출 (개인사업자의 경우, 동일 대표자의 타 사업장 성과합산 불가 / 자금신청 해당 사업자번호 기준)

① 고용증가

- (신청요건)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(창업 12개월 미만의 경우 창업 해당월)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*이 10명이상 증가한 기업

* 월말 인원 기준,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인원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

- (증빙자료) 신청 직전월 및 직전월 12개월전 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’ 각 1부씩

* (발급방법)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(<https://total.comwel.or.kr>) → 사업장 → 증명원 신청/발급 →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(조회기간: 해당월 월말일자~월말일자)

(예시) 2026년 1월 신청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조회기간을 2024-12-31~2024-12-31, 2025-12-31~2025-12-31으로 각 1부씩 출력하여 고용인원 10명이상 증가 여부를 비교·확인

시점	‘24년 12월	...	‘25년 12월	‘26년 1월
기준	신청 직전월 12개월 전 월말 (조회기간: 2024-12-31~2024-12-31)	...	신청 직전월말 (조회기간: 2025-12-31~2025-12-31)	정책자금 신청월
	↳ * 고용인원 10명 이상 증가 여부 비교			

② 수출향상

- (신청요건)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**직접 및 간접**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, 그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% 이상 증가한 기업 (**'24개월간 내역 확인필요**)

* 24개월 이하 수출실적 존재 기업의 판단 기준 (자금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, 24개월 기간 이내)

[수출실적 12개월 이하 보유 기업] 신청 직전월까지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달성 시 금리인하 신청가능
(예시) '26.1월 신청기업 중 '25.5월~12월 수출실적만 보유 시 '25.5~12월 합계 50만불 이상 여부만 확인

[수출실적 24개월 이하 보유 기업]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수출실적과 이전 기간 수출실적 비교
(예시) '26.1월 신청기업 중 '24.5월~'25.12월 수출실적만 보유 시 '24.5~12월과 '25.1~12월 실적 비교

- (증빙자료) (**직접수출**)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'수출실적증명서', (**간접수출**) 한국무역정보통신(UtradeHub) 발급 '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' 달러금액 합산

* (**직접수출**)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홈페이지(<https://www.trass.or.kr>) → 수출입실적 → 기관제출용(중소벤처기업부) 증명서 신청
(예시) '26.1월 신청기업의 경우 조회기간을 2024-01-01~2025-12-31으로 설정 (수리일 기준으로 수출 실적 계산)

* (**간접수출**) UtradeHub 홈페이지(<https://www.utradehub.or.kr>) →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→ 공급자 전용 서비스 → 간접수출 실적증명 → 수출실적증명 준비 → 작성 → 서식(대외무역법정서식)/제출처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/용도(관공서제출용) 설정 후 증명서 신청(보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UtradeHub-고객지원-자료실-간접수출실적증명-간접수출실적증명 이용 매뉴얼 참고)
(예시) '26.1월 신청기업의 경우 조회기간을 2024-01-01~2025-12-31으로 설정 (입금일 기준으로 수출 실적 계산)

시점	'24년 1월~12월	'25년 1월~12월	'26년 1월
기준	신청 직전 13개월 ~ 24개월	신청 직전 1개월 ~ 12개월 * 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	정책자금 신청월
↳ * 직간접 수출실적 20% 이상 증가 여부 비교			

③ 매출향상

- (신청요건) 정책자금 신청월 기준 가장 최근 결산 재무제표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 및 최근 4개년 재무제표의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% 이상

* (예외) 4개년 재무제표를 확인하였을 때 첫해연도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0원이어 증가율 산정이 불가할 시, 최근연도 매출액기준(30억원 이상)을 만족하면 우대금리 적용

** 법인은 4월, 개인사업자는 7월 직전연도 재무제표 발급여부 확인 및 결산시점이 상이하여 이외 시점에 신규 재무제표가 나오는 경우 등은 추가 점검

- (증빙자료) **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** 기준 금액 (재무제표 미제출 연도의 경우 중진공 홈페이지-디지털 지점-**세무회계 증명 제출을 통해 제출**)

※ 매출액 증가 평가방식

- 매출액 증빙서류(결산 재무제표)의 첫해연도와 최종연도(최근연도)를 확인하여 아래 산식에 적용

(예시) '26.1월 신청 기준, '25년 결산 재무제표 발행 전이므로 '21~'24년 재무제표 활용

'25년 재무제표 발행 시 '22~'25년 재무제표 활용 (**4개년 재무제표가 없거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우대 제외**)

(산식) 연평균 증가율(%) = $\frac{[(\text{최종연도 매출액} / \text{시작연도 매출액})^{(1/3)} - 1] \times 100}{1}$

(증가율 계산 Tip : 엑셀 RATE 함수사용, =RATE(3,0,-시작연도 매출액,최종연도 매출액))

※ 기타 문의사항 :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☎ 1811-3655